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가합50505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5. 5. 29.(피고 1, 2, 3.에 대하여)

2015. 7. 8.(피고 4.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394,139원 및 그 중 359,473,317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5. 1.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11. 24.자 매매계약을 41,017,223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41,017,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24.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3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4. 6. 23.(이후 2015. 6. 22.로 연장되었다),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대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되,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비용 등 부채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4. 12. 8. 폐업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3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62,734,027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0. 3,260,7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072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권의 집행보전 등에 지출한 대지급금은 919,750원이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2014. 11. 2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14.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 1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액 153,982,777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국민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및 실제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F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모두 2015. 1. 12.자 해지를 원인으로, F 근저당권은 2015. 1. 12., 국민은행 저당권은 같은 달 14. 각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1) 피고 회사, B, C: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한 이 사건 대출금 및 관련 비용 합계 360,394,139원{= 대위변제금 잔액 359,473,317원(= 대위변제 원금 362,734,027원 - 회수금액 3,260,710원) + 확정손해금 1,072원 + 대지급금 919,7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59,473,31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5. 1.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피고 회사가 폐업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시점 및 그에 따라 원고가 국민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나,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구상금 채무 등을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점,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채 1달이 되기도 전인 2014. 12.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 D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국민은행에 대출금채무 153,982,777원, F에 채무 1억 5,000만 원(이상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국민은행에 보증채무 1억 3,5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증채무 1억 원 등을 비롯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춘천시 G 임야 1,096㎡ 중 364/1,096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4,500만 원 상당이고, 위 임야 지분의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71,880원에 지나지 않으며, 위 임야 지분에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태산미트, 근저당권자 대성실업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F의 처로서 F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 D으로 하여금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재산가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이자 채권자 중 1인인 F의 처인 피고 D에게 매도하는 방식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F에게 대물변제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 B은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의 수익자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F이 피고 B에게 가지는 기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든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 등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3) 갑 제6, 10호증, 을라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D은 피고 B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F의 처인 점, 피고 D은 F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본 보증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2주 전인 2014. 11.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E에게 바로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국민은행 근저당권 및 F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한 다음 남은 금액을 F에게 지급한 점, 피고 D이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라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국민은행 및 F의 근저당권이 각 말소된 사실, 당시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53,982,777원, F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억 5,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3억 4,500만 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303,982,777원(= 국민은행 근저당권 153,982,777원 + F 근저당권 1억 5,000만 원)을 뺀 41,017,223원(= 3억 4,500만 원 - 303,982,777원) 부분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41,017,223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D은 원고에게 41,017,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오선희

판사이승훈

판사주은영

별지